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1

발의연월일: 2024. 6. 26.

발 의 자:정희용・김선교・구자근

박덕흠 • 주호영 • 김종양

임이자 · 정점식 · 강승규

박충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·농업용 시설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, 일몰기한이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.

농촌지역은 저출산 및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에 따라 소멸위험지역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.

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으므로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 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함(안 제6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9년 1 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조(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제6조(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한 감면) ① ~ ③ (생 략) 한 감면) ① ~ ③ (현행과 같 음)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(4) -----따라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 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 농인(이하 이 항에서 "귀농인" 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(이 하 이 항에서 "귀농일"이라 한 다)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, 「농지법」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(농지,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 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,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 다)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

분의 50을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
지 경감한다. 다만, 귀농인이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
세를 추징하되, 제3호 및 제4호
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
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
징한다.

1. ~ 4. (생략)

<u>2029년 12월 31일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